

전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1가단 유치권 부존재 확인
원 고 주식회사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전
종필 사무소(만성동 1366-9)(송달영수인 전종필)

대표이사

소송대리인

피 고

전북

소송대리인 변호사

변 론 종 결 2021. 9.

판 결 선 고 2021. 1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는 2013. 1. 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부동산'이라 함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. 3. 이 사건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,000만 원, 채무자 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.

나. 위 회사는 2019.경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에 관하여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, 2019. 9.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(2019타경 호) 같은 날 이 사건 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(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 함).

다. 피고는 2019. 11.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에 관하여 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15, 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 상당의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.

라. 원고는 2020. 7.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11, 1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들 주장의 요지